

#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

제출년월일 : 2002. 3. 25

제출자 : 장준호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관리인의 해촉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안 제4조에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추가 하기 위함

## 2. 주요 골자

-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 - 보호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보호관리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
  -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·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
  -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##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 
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관리인의 의무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유기동물을  
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 
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보호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보호관리 수행능력이  
없을 경우
2.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·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  
을 경우
3.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  
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 (해촉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	제4조 (관리인의 의무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1. -----	1. -----
2. -----	2. -----
3. -----	3. -----
-----	-----